

5. 입대휴학 및 제대복학

* 입대휴학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에 휴학하는 것으로 입대 전에 학사서비스(GLS)로 신청하여야 하며, 입대일자부터 입대휴학이 시작됩니다.

-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입대일 4주 전부터 학사서비스(GLS)로 신청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등 입대휴학 증빙서류를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대휴학 신청 없이 입대할 경우,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
 -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귀향조치 되거나, 본인 신청,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등 증빙서류를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학상태에서 입대휴학 한 학생이 귀향 또는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다시 재학생 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즉각 학업에 복귀하여 해당 학기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귀향 또는 입영연기 조치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대휴학자 인정학점**

학생이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종강일 이내에 입대휴학 할 경우,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받고 복학 후 다음 학기를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포기하고 복학 후에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인정을 희망한 경우**
 -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은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차후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대 전 학생 스스로 각 과목별로 담당 교강사와 상의하여 입대 후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개별시험, 리포트제출, 개별발표 등)를 취해야 합니다.
 -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성적, 출석 상황,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성적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불인정을 희망한 경우**
 -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부과하여도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휴학 당시의 학기를 다시 재학하여야 하므로, 제대복학 후 무료복학 대상자로 조치합니다.

- **신청 방법**
 - 학사서비스(GLS)에서 입대휴학 신청 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합니다.



★ 제대복학

입대휴학하여 병역의 의무를 필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대복학 준비서류

- 병적사항이 기재된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전역증

• 제대복학 절차

-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복학기간에 제대복학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복학 신청 및 수강신청 사항이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강 후의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 현역 및 공역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3/4)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여 전역할 경우에도 조기 제대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4 경과 후에 있는 자는 복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전역일이 수업일수 1/4 경과 후 2/4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휴가증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대장 추천서)을 학사서비스(GLS)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복무기간 종료 후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전역증 혹은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대휴학 만료 제적처리

-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입대휴학 만료 제적처리됩니다.
(예시) 전역일자가 2020년 5월 중에 있는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전까지 반드시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 후 재입학해야 함